
2025년 첨단바이오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

2025. 6.



목 차

I. 지원 개요	1
1. 지원목적 및 내용	2
2. 지원절차	3
II. 지원 프로그램 소개	4
2.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	5
4.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6
7. 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 지원	7
8. 투자 역량 강화 지원	8
III. 사업신청 및 선정	10
1. 사업신청 및 접수	11
2. 평가절차	12
IV. 지원방법 및 유의사항	13
1. 지원방법	14
2. 유의사항	16

I

지원 개요

1

지원목적 및 내용

□ 지원목적

-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*를 활용한 차세대 뷰티 제품 제조 기업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

* 세포유래, 펩타이드,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,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,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
(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)

□ 지원내용

- 기업당 3개 프로그램 지원 가능(기 선정된 프로그램 포함)

구분	지원 프로그램	지원규모(건별)	비고
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 (강릉과학산업진흥원)	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	1건 (최대 1,000만원)	지원기관 직접지원
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(제주테크노파크)	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1건 (최대 600만원)	지원기관 직접지원
마케팅 활성화 지원 (강릉과학산업진흥원)	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 지원	4건 (최대 1,000만원)	지원기관 간접지원
	투자 역량 강화 지원	3건 (최대 1,000만원)	지원기관 간접지원

※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규모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
(예) 총 소요금액 1,250만원 = 지원금 1,000만원(80%) + 자부담금 250만원(20%)

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2

지원절차

□ 강릉과학산업진흥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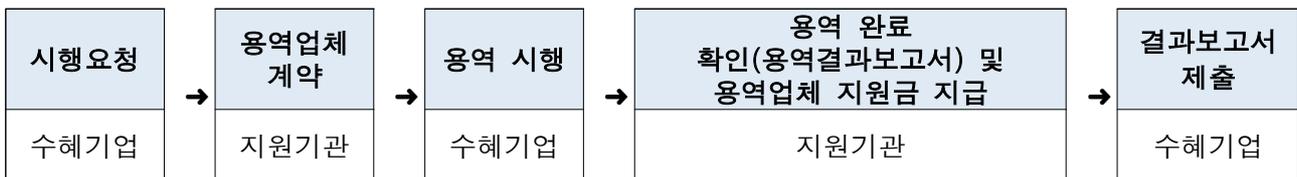
○ 지원기관 직접지원

-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



○ 지원기관 간접지원

- 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 지원
- 투자 역량 강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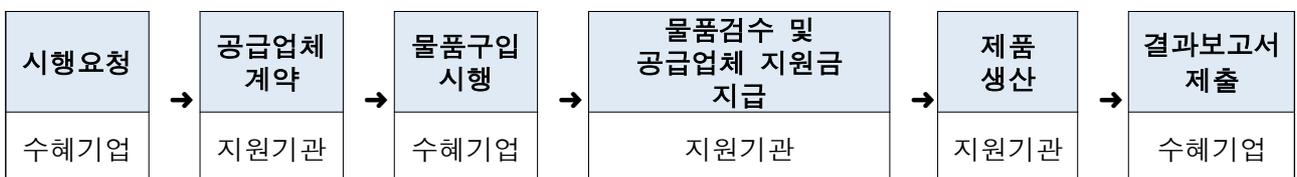


☆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금(총 소요금액의 20%)에 대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) 제출 필수

□ 제주테크노파크

○ 지원기관 직접지원

-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



※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, 외부 위탁생산 가능

☆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금(총 소요금액의 20%)에 대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) 제출 필수

표

지원 프로그램 소개

1.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

□ 지원목적

- 시장(고객)의 니즈에 대응한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과 상용화를 통하여 기업성장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소재화 기술 확보와 아이템의 기술 사업화 경쟁력 강화

□ 지원규모

- 1건(최대 1,000만원/건)

□ 지원내용

① 공정설계 지원

-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공정 설계 지원
 - 제조공정도, 기준규격 확인 검토, 추출가공 방법 결정, 배합비율 결정 (주원료, 부원료, 결합제 등)
 - 유기용매 추출공정, 발효공정, 안정화공정, 분말화 공정, 안정화 공정 등

② 대량생산 공정 지원

- 국내외 거래처 납품을 위한 효능 소재 시생산 지원
 - 최종 추출분말, 추출농축엑기스, 발효분말, 발효액 등
 - 최종 효능 소재의 안정화 액상 제품(리포솜 등)

1.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

□ 지원목적

-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한 우수 시설·장비 및 인력자원을 활용한 제품 제형 확립 등 기술지원 및 샘플제작 지원

□ 지원규모

- 3건(최대 600만원/건)

□ 지원내용

① 직·간접지원

- 용기선정에 따른 제품 용기 반응 테스트
- 개발제품 반제품 직접생산(레시피 제공에 따른 제주테크노파크 생산) 또는 위탁생산(지원 종료 후 지정된 제조원의 생산업체)
- 개발제품(샘플)의 원부자재 입고에 따른 완제품 생산지원
- 완제품생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 관련 서류제공

② 생산지원 범위

- 생산 수량은 일반 화장품의 경우 1,000개 내외, 마스크팩은 5,000장 내외로 함
- 수혜기업 보유 처방 미공개에 따른 반제품 입고 후 충·포장 생산도 가능
-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내용물 및 용기 단상자에 한함 (디자인 비용 계상 금지)



1. 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 지원

□ 지원목적

-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 제품의 온·오프라인 유통 및 광고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판로진출 지원

□ 지원규모

- 4건(최대 1,000만원/건)

□ 지원내용

- 온/오프라인 유통 및 홍보 채널 확보, 개발 제품 마케팅 지원
 -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기업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 지원
- B2B 거래 확대를 위한 유통 채널 입점 지원

2. 투자 역량 강화 지원

□ 지원목적

-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 제공과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통한 자금 조달 애로 해소

□ 지원규모

- 3건(최대 1,000만원/건)

□ 지원내용

① 기업 맞춤형 투자 역량 강화 지원

- 투자 역량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보완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
 - 기업 투자단계별/니즈별 투자 지원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 지원 효과성 제고
- 지원프로그램(프로그램별 복합지원 가능)

연번	분야	세부내용
1	투자컨설팅	▪ (지원내용)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
2	투자용 기술평가	▪ (지원내용)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
3	IR 디자인 고도화	▪ (지원내용) IR 피칭덱 디자인 고도화 지원
4	IR 피칭 코칭	▪ (지원내용) IR 피칭 방법 및 노화우 교육 지원
5	비즈니스 모델 진단	▪ (지원내용) 비즈니스모델(BM) 진단 및 검증

② 투자상담회 개최

- 펀드 운용사와 기업의 소통 및 투자 기회 마련
 - 기업 투자단계별/니즈별 투자 지원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 지원 효과성 제고
- 투자사-창업기업 간 1:1 심층 투자상담
 - 기업·사업모델 소개, 기업진단, 투자유치 노하우 및 솔루션 등 멘토링
 - 차수별로 투자사당 2~3개사와 1:1 심층상담(기업별 30분 이내) 진행
- 운영방법(IR/현장상담 1회 개최 → 강원TP와 공동 협업 진행)

[1부] IR 발표

▪ IR 현장 발표

- (참여기업) 펀드운용사 선호도 투표에 따라 고득점 기업 선발
- (발표) 5개사/기업당 20분(IR 10분, 질의응답 10분)
- (심사) 기업 장점 및 개선점 투자 진행여부 등

[2부] 1:1 현장상담

▪ 1:1 현장상담

- (매칭) 펀드운용사의 선호도 및 투자규모,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매칭
- (참여) 20개사 내외
- (현장상담/컨설팅) 기업당 20~30분 내외

※ 투자 역량 강화 지원 선정기업은 향후 투자상담회 필수 참여

Ⅲ

사업신청 및 선정

□ 사업신청

- 신청기간: 2025. 6. 19.(목)~7. 8.(화) 18:00 (시간엄수)
- 신청방법
 - 이메일 접수(오지연 주임: ojy@gsipa.or.kr)
 - ※ 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메일 송부 예정. 확인 마감일까지 회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, 누락된 신청 건이 없다고 판단 후 선정평가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
 - 지원 프로그램별 총 3개까지 신청 가능함(기 선정된 프로그램 포함)
-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※ 사업신청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 - ※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 포함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1단계(서류심사)

- 심사기간: 2025. 7. 9.(수)~10.(목)
- 검토내용: 지원분야, 신청자격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

□ 2단계(발표심사)

- 평가기간: 2025. 7. 16.(수)~17.(목)
- 평가위원: 외부 전문가 5~7인 이내 구성, 수혜기업 선정 평가 실시
- 평가방법: 서면평가 및 발표심사(온라인 ZOOM)
 - 지원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, 100점 만점 기준
 -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
 - 온라인 발표심사로만 진행되며, ZOOM 링크는 평가 1일 전 메일로 공유 예정(메일 확인 필수)
- 발표심사 절차: ① 지원기업 PT 발표 → ② 질의·응답



- 평가기준: 적합성, 내용 및 범위, 필요성, 기업역량,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
- 결과발표: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개별 메일 통보
 - ※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(발표심사 개별 연락)
 - ※ 단계별 평가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V

지원방법 및 유의사항

□ 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

-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소요금액의 20% 자부담 필수
 - 수행기간 내,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투입 기재에 대한 수혜 기업 현금성 지출금액의 합계로 증빙(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)
 - ※ 생산지원의 경우 원료(현물)로 가능하며, 외부용역의 경우 지원금액 총액의 현금 부담
 -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
-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술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 - 선정 후 협약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지원기관의 직접 수행 지원
 - 용역지원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한 비용 지급

□ 결과물 제출

-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내용에 대하여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
-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- ※ 제출한 자료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

□ 문의처

담당기관(담당업무)	담당자	전화	이메일
강릉과학산업진흥원 (소재 대량생산, 마케팅 지원)	김광우 팀장	033-650-3355	gwkim@gsipa.or.kr
	오지연 주임	033-650-3375	ojy@gsipa.or.kr
제주테크노파크 (제품화 샘플제작)	진희철 수석	064-720-2357	coolguy@jejutp.or.kr
	문정호 연구원	064-720-2353	mjh7442@jejutp.or.kr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,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. 또한,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
-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
- 성과 증빙자료는 성과 보고 용도로만 사용됨.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, 향후 지원사업에 제한될 수 있음
-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·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 - ※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 포함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